

제341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17. 3. 13 ~ 3. 24)



전라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341회 정례회

(2017. 3. 13 ~ 3. 24)

제341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19차례의 촛불집회,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박영수 특검의 수사 등 우리 사회는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졌었습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중심은 국민이고 이를 망각하는 세력은 단죄될 수밖에 없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합니다.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승자와 패자가 아닌 우열 없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모두의 희망을 향해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도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립하고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금운용본부가 우여곡절 끝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치고 지난 2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11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새롭게 등지를 틀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혁신도시가 우리 도민들의 소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에 공공편의시설 공급 등 자족기능 확충과 이전한 기관 간 기능과 역할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등 전북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완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들도 전라북도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 도민 소득 증대 기여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혁신도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입주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1년의 시작입니다. 새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로 설레기도 기대와 설렘 못지않게 새 학기를 맞이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가운데서 꿈을 키우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학예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정된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고 도정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탄핵 인용으로 인해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했지만 우리는 지방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봄으로 가는 길목의 환절기라 날씨의 변동이 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황 현

목 차

제341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2. 회기 및 운영
3. 의 사 일 정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2. 처 리 현 황
3. 위원회별 처리현황
4. 주요 처리사례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6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2. 2016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I .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17. 3. 8(수)
- 집회 일자 : 2017. 3. 13(월) 14:00
- 집회 사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0대)

- 회 기 : 2017. 3. 13 ~ 3. 24(12일간, 2017년 : 27일, 총누계 436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4(연누계 : 8, 총 누계 84)
 - 상임·특별위원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농산업 경 제	문화관광 건 설	교 육	특 별
제340회 임사회	11	1	2	1	2	1	3	1
2017 년도	40	4	8	6	7	7	7	1
총 누 계	738	51	154	103	117	125	138	47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3.13(월)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1차 본회의 》</p> <p>○ 개회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4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학교총량제와 국정교과서 강행하는 교육부 규탄 결의안 5.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14(화) 10: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2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괄질문·일괄답변 : 최인정 의원, 김대중 의원, 최훈열 의원, 이학수의원, 박재완 의원 	
3.15(수) 10: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3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일괄질문·일괄답변 : 양성빈 의원, 최영규 의원, 정호영 의원, 김영배 의원, 박재만 의원 2.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 3. 본회의 휴회의 건 	
3.23(금) 14:00	<p style="text-align: center;">《 제4차 본회의 》</p> <p>○ 5분 자유발언</p> <p>- 송성환 의원, 최인정 의원, 장명식 의원, 김종철 의원, 최영일 의원, 이현숙 의원, 이호근 의원, 장학수 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 4.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5.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6.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7.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0.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 11.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초등학교) 14.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존치 촉구 결의안 15. 최순실 등 불법·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결의안 16. 군산조선소 건조 물량 배정과 도크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운영위원회	3.13(월) 11: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전 심사의 건 - 제34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3.13(월) 16: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교육재정 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3. 16(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소방정대(군산 비응항) 	
환경복지위원회	3. 20(월)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녹지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사업 설치지원 조례안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현지 의정활동 -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방문 - 전북권역 심뇌혈관센터 방문 	
농산업경제위원회	3.15(수) 16: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 심사 -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안 	

	3.16(목)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문화건설 안전위원회	3.13(월) 16: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심사 -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 콘텐츠산업진흥원 조직·인력 용역 중간 보고 	
교 육 위 원 회	3. 16(목) 10: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 - 전라북도교육청 	
	3. 17(금)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교육지원청) -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3. 20(월)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보고 청취(직속기관) -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 교육의 소관 의안 심사 	
특 별 위 원 회	3.15(수) 15: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 새만금투자 MOU 조사특위 회의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341회 (2017. 3. 24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19	10	7	3			2			5	2	
	누 계	1005	568	249	319	10	11	1	332	35	114	44	
의 회	소계	금회	12	5	4	1					5	2	
		누계	526	351	216	135		11	1	7		114	42
	의원	금회	12	5	4	1					5	2	
		누계	462	351	216	135		10		3		103	16
	위원회	금회											
		누계	44					1	1	4		12	26
	도지사	금 회	6	5	3	2			1				
		누 계	362	168	29	132	7			174	19		
교육감	금 회	1						1					
	누 계	117	49	4	42	3			51	16		1	

2. 처리현황

○ 총 관

제341회 (2017. 3. 24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19	20	16	4					
	누계	1005	982	826	130		15		12	23
조 례 안	소계	금회	10	10	7	3				
		누계	568	546	433	105		3		5
	의회	금회	5	5	5					
		누계	351	328	266	62				
	도지사	금회	5	5	2	3				
		누계	168	165	125	38		2		1
	교육감	금회								
		누계	49	48	42	5		1		
규 칙 안	금회									
	누계	11	10	10					1	
규 정 안	금회									
	누계	1	1	1						
승인동의안	금회	2	3	2	1					
	누계	332	331	211	7		9		4	1
일 반 의 안	금회									
	누계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35	35	16	17		2		1	
건의결의안	금회	5	5	5						
	누계	114	113	110	1		1		1	1
기 타 의 안	금회	2	2	2						
	누계	44	44	44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2	10			2					13	9	4				
	누계	859	563	11	1	225		21	17	3	836	691	114	16	12	23	
운 영 위 원 회	금회																
	누계	51	33	11	1				6		46	42	1	1	2	5	
행 정 자 치 위 원 회	금회	3	2			1					4	4					
	누계	170	123			35			2	1	168	145	21	2		2	
환 경 보 지 위 원 회	금회	2	2								2	2					
	누계	122	102			17			3		118	97	18	1	2	4	
농 산 업 경 제 위 원 회	금회	4	4								4	2	2				
	누계	144	72			69			3		139	115	16	7	1	5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금회	2	2								2	1	1				
	누계	156	98			54			4		154	121	23		3	2	
교 육 위 원 회	금회	1				1					1		1				
	누계	176	123			50		1		1	169	143	19	3	4	7	
특 별 위 원 회	금회																
	누계	36						34	1	1	36	18	16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7						5	2	7	7					
	누계	146	1			7		100	38	146	143	2		1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9	10			2		5	2	20	16	4				
	누계	1005	568			332		114	44	995	864	129	14	12	23	

제10대 의안처리 현황

○ 기관 및 의안별 <접수>

제341회 (2017. 3. 24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일반 의안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1005	568	249	319	10	11	1	332		35	114	44
의 회	소 계	526	351	216	135		11	1	7		114	42
	의 원	462	351	216	135		10		3		103	16
	위 원 회	44					1	1	4		12	26
전라북도지사	362	168	29	132	7			174		19		
전라북도교육감	117	49	4	42	3			51		16		1

○ 의안 및 처리유형별

제341회 (2017. 3. 24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1005	982	826	130		15		12	23	
조 례 안	소 계	568	546	433	105		3		5	21
	의 회	351	328	266	62					
	도 지 사	168	165	125	38		2		1	2
	교 육 감	49	48	42	5		1			1
규 칙 안	11	10	10					1		
규 정 안	1	1	1							
승 인 동 의 안	332	331	211	7		9		4	1	
일 반 의 안										
예 산 결 산 안	35	35	16	17		2		1		
건 의 결 의 안	114	113	110	1		1		1	1	
기 타 의 안	44	44	44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2. 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2. 8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역량 결집을 통한 도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 재경도민회장을 명예도지사로 위촉, 전북도, 출향 도민, 정치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함
- ※ 근거 :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주요내용

성명	소속/직위	출신	주요활동	비고
송현섭 (37.10.12)	재경전북도민 회장	정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1대 재경전북도민회장 ○ '11년도부터 매년 100명 대학생에게 총 6억여원의 장학금 기탁 ○ 출향도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북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고향사랑 실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화정초등학교)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2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주○○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전주 에코시티)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을 배치하고,
- 개발지구 내 학교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주시 송천동에 ‘가칭’ 화정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립학교 설립

(단위 : 학급, 명, m², 천원)

지역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설립예정지	개교 예정일	소요 예산액	비고
		일반	특수	유치원					
전주	화정초	42	1	4(1)	1,21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17-9일원	2020.3.1	30,600,504	

※ ()는 유치원 특수학급으로 본 수에 포함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 변경(안 제3조제1항)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를 현재의 “매 분기별 전출”에서 “매 월별 전출” 하도록 하고,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액에 대한 정산시기를 “반기별 정산”에서 “분기별 정산” 하도록 변경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규정한 출연기관(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16.9.5기관명칭 변경)) 설립 등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기관별 특성에 부합한 지역산업육성 기능 명확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전북테크노파크 및 전북자동차기술원의 법인 설립에 관한 조문 삭제

- 제7조(재단법인의 설립), 제8조(전북테크노파크의 설립), 제9조(전북자동차기술원의 설립)

나. 법인 운영·지원에 관한 조문 삭제

- 제10조(수익사업), 제11조(재원조달),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회계연도), 제14조(보고 및 검사 등),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1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규정한 출연기관(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16.9.5기관명칭 변경)) 설립 등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기관별 특성에 부합한 지역산업육성 기능 명확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1조~제10조)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1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수정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그간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내 포함된 자동차융합기술원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기관의 성격에 부합되게 자동차산업육성 기능 명확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4조)
- 나. 재원의 조성, 회계연도 준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다. 출연금 등과 관련된 보고 및 검사,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전라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5. 6. 4.일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제명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선 또는 보완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 반영 (제1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나. 업무이관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 변경 (제2조)
 - 부위원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 건설교통국장
- 다. 위촉직 위원 임기 변경 및 해촉 조항 신설 (제3조)
 - (임기) 4년 연임 → 2년 연임(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 (해촉)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에 대하여 해촉

전라북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송성환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20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 집하장소가 따로 없어 상습무단투기 및 거리에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새벽시간 단독주택지역을 돌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주민 차량으로 인해 진입 및 수거가 어려움
- 이에 시·군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 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신청과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제5조)
- 다. 사업점검부터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제9조)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이상현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로 도서의 소비·향유 거점으로서 지역서점을 육성하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활성화 되도록 지역서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안 제5조)
- 나. 지역서점 협력사업 및 협력체계구축 등(제6조~안제7조)
- 다.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회의 운영 등(안 제8조~13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道 발전에 폭넓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성명	소속/직위	출신	주요경력	비고
조희현 (63.4.22)	전북경찰청장	서울	○ 前 경북경찰청장	
임성환 (62년생)	국정원 전북지부장	전남 (해남)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안

제 출 자	강용구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청년정책의 지원방향 정립과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도의 책무와 분야별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 고용촉진, 창업 지원,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문화 복지 활성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청년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라. 청년의 소통,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마.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창업, 주거 및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 ~ 제20조)
- 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송지용 의원 외 10인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회 부 일 자	2017. 3. 7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TF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며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하지 않는 등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을 강화함
- 또한 회의자료와 의견청취를 신설함으로써 회의자료의 공정성을 기하고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와 당연직 위원의 불참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에 TF(Task Force) 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포함(안 제3조제1항 제4호)
- 나.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안 제6조제6항에서 제8항까지)
- 다.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록 작성 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함(안 제10조 2)
- 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서면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 2)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정호영·양성빈·국주영은·정호운 송지용 의원 외 3인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환경복지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17. 3. 20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자원봉사를 비롯한 사회 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나.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을 정함(안 제6조)
- 다. 노후지원법에 의해 지역노후지원센터가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7조)
- 라. 중·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 개발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탁 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 마. 전라북도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를 둠 (안 제9조)

의안번호 999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전라북도의회의장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이 송 기 관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위원 10명 선임

주요내용

- 가. 출석일시 : 2017. 3. 14 ~ 3. 15(2회)
- 나. 출석대상 :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 다. 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출 자	송지용 의원 외 7인		제 출 일 자	2017. 3.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15		이 송 기 관	도지사,교육감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출석일시 : 2017. 3. 14(화) ~ 3. 15(수) [2일간]
- 나. 출석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 다. 출석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 라. 출석장소 : 전라북도 본회의장

학교총량제와 국정교과서 강행하는 교육부 규탄 결의안

제 출 자	이해숙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3.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13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14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국정교과서와 학교총량제가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박근혜표 유신산물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철회와 신규택지개발 지역 학교신설을 허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주체간 갈등과 혼란이 해소되도록 하는 학교총량제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 이처럼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교육부의 비교육적인 행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하게 중단 촉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교육부는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박근혜표 유신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철회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정중하게 사과하라.
- 나. 신규택지개발 지역 학교신설을 허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주체간 갈등을 해소하라. 학교총량제는 우리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외면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감소시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교신설 정책을 전면 개편하라.
- 다. 국민이 신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위해 교육부를 대신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하라.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보장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3. 1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15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16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새만금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염원은 정부와 정치인, 지자체 등이 앞장서 만들었다. 그런데 현실은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공사는 중앙1군 업체가 독점하고, 지역업체 참여는 절대 미흡한 기대이하 성적표를 내고 말았다.
- 전라북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이 전북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 주요내용

- 가. 새만금 매립공사, 도로건설, 항만, 공항 조성 등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
- 나. 새만금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보장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하라.
- 다.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턴키발주 제도를 폐지하라.
- 라. 일반산업단지로 규정된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존치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한완수·장학수·최진호·박재완·양성빈 의원 외 4명		제 출 일 자	2017. 3.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전북지역본부의 경우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흡수·통합됨으로써 두 지역본부를 호남 지역본부로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
- 소외와 지역차별, 그리고 낙후로 얼룩진 전북의 지역발전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능조정 방안은 전북 소외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처사임
- 이에 ‘전북 뭍 찾기’를 내세우며 소외와 낙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180만 전북도민들의 몸부림을 대변하고자 전라북도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의 존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최순실 등 불법·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영규 의원 외 8인		제 출 일 자	2017. 3. 2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최순실 등 불법·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주요내용

- 가. 부정축재로 형성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불법·부정축재의 해외 및 조세 피난처에 은닉한 재산까지 추적해 환수하라.
- 나. 권력형 재산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실명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 등을 강화하라.

군산조선소 건조 물량 배정과 도크폐쇄 철회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최인정 의원 외 9인		제 출 일 자	2017. 3. 2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17. 3. 24	심 의 결 과	원안가결
이 송 일 자	2017. 3. 27		이 송 기 관	청와대 등
공 포 일 자			공 포 번 호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는 지금이라도 현대중공업 대주주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결의안을 채택함.

주요내용

- 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수주실적이 개선된 현 시점에서 군산조선소를 폐쇄할 이유가 없다.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기업과 근로자,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줄 것을 촉구한다.
- 나. 현대중공업 대주주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군산조선소를 폐쇄한다면 우리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 다. 정부는 대마불사의 잘못된 신화를 만드는 대우조선에 대한 막무가내식 세금투입과 물량 몰아주기를 중단하고, 세금투입이 필요 없는 군산조선소에 배 건조 물량 배정을 촉구한다.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17. 3. 13 ~ 2017. 3. 24)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	환경	산업 경제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통	도시 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 회	2		1							1				
2017년 누 계	6		1					1	1	2	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 원 별					기관단체
		소 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 회	2	2	2				
2017년 누 계	6	6	4		2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 리 별					처리중
		소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금 회	2	2	2				
2017년 누 계	6	6	6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0대)

(2014. 7. 1 ~ 2017. 3. 24)

구 분	위 원 회 별	접 수	처 리 상 황				비 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73	73	73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7	7	7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8	1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9	9	9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6	26	26			
	교 육 위 원 회	7	7	7			
	기 타	6	6	6			
금회	소 계	2	2	2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환 경 복 지 위 원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1	1	1			
	기 타	1	1	1			
누계	소 계	75	75	75			
	운 영 위 원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7	7	7			
	환 경 복 지 위 원 회	18	18	18			
	산 업 경 제 위 원 회	9	9	9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26	26	26			
	교 육 위 원 회	8	8	8			
	기 타	7	7	7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17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7. 3. 13 ~ 2017. 3. 24)

기관별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율(%)	비 고
	계	금 회	15	15		100
누 계		52	52		100	
도	금 회	13	13		100	
	누 계	46	46		100	
교육청	금 회	2	2		100	
	누 계	6	6		100	

2. 2017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7. 3. 13 ~ 2017. 3. 24)

기관별	구 분	계	운 영	행 정 자 치	환 경 복지	산 업 경 제	문화관 광 건 설	교 육	특 별
	계	금 회	15		3	2	2	2	6
누 계		52		7	9	7	14	15	
도	금 회	13		3	2	2	2	4	
	누 계	46		6	9	7	14	10	
교육청	금 회	2							
	누 계	6		1				5	

3. 제10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14. 7. 1 ~ 2017. 3. 24)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826	1826		
전라북도	1390	1390		
교 육 청	436	436		

4.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14. 7. 1 ~ 2017. 3. 24)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1826	439	257	202	322	565	28	13
전라북도	1390	402	237	191	300	240	15	5
교 육 청	436	37	20	11	22	325	13	8

5. 제10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14. 7. 1 ~ 2017. 3. 24)

구 분	계	운 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경제	문화관광 건설	교 육	특 별
합 계	6167	1772	633	829	897	1643	230	163
전라북도	5087	1678	588	795	819	1018	125	64
교 육 청	1080	94	45	34	78	625	105	99